

제164회 진각복지재단 이사회 회의록

2023. 05. 09. (화)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Jin-Gak Welfare Foundation

제164회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이사회

1. 일 시 : 2023년 05월 09일(화) 14시00분

2. 장 소 : 대한불교진각종 진각문화전승원 4층 회의실

3. 참석임원 : 출석임원명단

대표이사	김영식	이사	정일호
이사	김성학	이사	조기룡
이사	박형준		

4. 이사정수 및 출석임원

- 이사정수 8명 / 출석임원 총 5명(이사 5명)

5. 부의안건

- 1) 산하시설(보육시설) 2022년 결산 심의의 건
- 2) 산하시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전용 심의의 건
- 3) 산하시설 신규위탁사업 심의의 건
(낙동종합사회복지관-부산시 강서구 장애인도시락 배달사업)
- 4) 산하시설 운영규정 개정 심의의 건(지사어린이집)

6. 성원보고

재적이사 8명중 5명의 이사가 참석하여 개의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이사가 출석하였기에 법인 정관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이사회가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최를 선언한 후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7. 개최예참

오대서원 봉독 및 유기삼발을 하다.

8. 대표이사 인사말씀

9. 전회 이사회 결의사항 보고

과장 김대해는 배포된 이사회 보고 자료집을 통해 전회(제163회)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낭독하다.

부의안건 1) 산하시설(보육시설) 2022년도 결산 심의의 건

1. 과장(김대해)은 「산하시설(보육시설) 2022년도 결산 심의의 건」을 보고하다.

(단위 : 천원)

연번	시 설 명	2022년 예산(A)	2022년 결산(B)	증감(B-A)	비고
총 계		4,026,166	3,818,867	-207,299	
1	낙동어린이집	537,320	528,177	-9,143	
2	지사어린이집	526,813	525,048	-1,765	
3	꿈나무어린이집	783,864	698,876	-84,988	
4	시립호매실어린이집	1,225,350	1,156,128	-69,222	
5	푸른숲어린이집	952,819	910,638	-42,181	

2. 본 회의 첫 번째 안건인 「산하시설(보육시설) 2022년도 결산 심의의 건」에 대해 이사진 전원 찬성을 포함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다.

부의안건 2) 산하시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전용 심의의 건

1. 과장(김대해)은 「산하시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전용 심의의 건」을 보고하다.

(단위 : 천원)

연번	시설명	기정예산 (A)	추경예산 (B)	증감 (B-A)	전용	비고
총 계		17,196,059	17,466,135	270,076	7,995	
1	해민 노인요양원	631,769	661,996	30,227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배치기준 변경에 따른 수가인상으로 요양급여 및 본인부담금 수입 증가 - 시설 입소자 생계비지원 대상자 변경에 따른 식재료비수입 감소 아울러 보조금수입 증가 - 인력배치기준 변경으로 인력추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 - 검체채취지원금 및 개별의료비 증가에 따른 접수입 증가
2	포항 일자리창출 시니어클럽	6,165,641	6,221,641	56,000	4,2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비 증가로 전용 - 제수당, 제세공과금, 차량비 증가로 전용
						<p>관 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사업비/기타사업비 1,000천원 → 재산조성비/시설비/시설비 1,000천원 <p>목 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비/인건비/기타후생경비 220천원 → 사무비/인건비/제수당 220천원 ● 사무비/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 2,340천원 → 사무비/운영비/제세공과금 2,340천원 ● 사무비/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 700천원 → 사무비/운영비/차량비 700천원
3	진각흙케어 성북센터	775,486	782,986	7,50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홍보비 지원금에 따른 홍보비 증가
4	진각재가 노인지원 센터	259,426	259,426	0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증가로 인한 전용 - 운영비(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증가로 인한 전용
						<p>관 간</p> <p>[보조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사업비/재가복지사업비 160천원 → 사무비/인건비/급여 160천원 ● 사업비/사업비/재가복지사업비 12천원 → 사무비/인건비/제수당 12천원 ● 사업비/사업비/재가복지사업비 14천원 → 사무비/인건비/퇴직금및퇴직적립금 14천원 ● 사업비/사업비/재가복지사업비 19천원 → 사무비/인건비/사회보험료 19천원 ● 사업비/사업비/재가복지사업비 295천원 → 사무비/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 295천원 ● 사업비/사업비/재가복지사업비 1,200천원 → 사무비/운영비/공공요금 1,200천원
5	낙동재가 노인요양 센터	1,076,346	1,080,046	3,70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예산분류에 따른 세목별 사업예산 분류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 후원금, 접수입 증가
6	낙동종합 사회복지관	5,191,111	5,330,635	139,524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보조금 사업(장애인도시락배달사업) 선정 및 급식지원사업 보조금 예산 증가로 인한 보조금 증액 - 후원금 사업량 증가에 따른 후원금 수입 증액

7	울산북구청 신재활시설 마음봄	246,586	249,186	2,600	0	- 간호학생 실습비 및 실습지도비 수입에 따른 접수업 증가 - 사업진행에 따른 사무비 및 재산조성비 추가, 자부담 예산 재편성
8	꽃바위 다함께 돌봄센터	119,726	120,326	600	1,680	- 운영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른 예산 재편성 - 독서활동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예산 재편성 [사업수입] ● 사업비/사업비/체험활동사업비 1,680천원 → 사업비/사업비/독서활동사업비 1,680천원
9	큰골다함께 돌봄센터	116,415	120,015	3,600	55	- 지정기탁 후원금 증액에 따른 사업비 재편성 - 사업수입금 증액에 따른 사업비 재편성 [후원금] ● 사무비/운영비/공공요금 55천원 → 사무비/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 55천원
10	선재누리	841,776	855,776	14,000	300	- 2023년 한파대비 취약시설 난방비(공공요금 부분) 추가지원 조치에 따라 보조금 9,000,000원 증액 - 소규모 시설 기능보강 지정후원사업 예정에 따라 지정후원금 5,000,000원 증액 - 법인전입금 목간 전용에 따라 운영비 부분 증액 및 감액 [전입금] ● 사무비/운영비/제세공과금 300천원 → 사무비/운영비/여비 200천원 → 사무비/운영비/기타운영비 100천원
11	낙동 어린이집	502,081	503,693	1,612	0	- 원아수에 따른 보육료 감소 - 직장위탁 체결로 인한 위탁보육료 예산편성으로 전입금 증가 - 결산 후 이월금 결정에 따른 전년도 이월액 증가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변경으로 인건비 보조금 증가
12	시립호매실 어린이집	1,269,696	1,280,409	10,713	0	- 보육료 : 야간연장반 이용아동 감소로 인한 감액 - 수익자 부담금 : 현장학습으로 인한 증액 - 인건비 : 영아반 보조교사 추가 채용으로 인한 증액 - 운영보조금 : 연장보육 아동 증원으로 인한 증액 - 전입금 : 전입금 증액 - 적립금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수입 증액 - 기본 보육활동비 : 다수행사로 인하여 행사비 증액 - 선택적 보육활동 : 특별활동 및 현장학습으로 인한 증액 - 시설비 : 시설노후로 인한 공사비 증액 - 잡지출 : 야간연장석식재료 구입비로 인한 증액

2. 본 회의 두 번째 안건인 「산하시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전용 심의의 건」에 대해 이사진 전원 찬성을 포함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다.

부의안건

3) 산하시설 신규위탁사업 심의의 건 (낙동종합사회복지관-부산시 강서구 장애인도시락 배달사업)

1. 과장(김대해)은 「산하시설 신규위탁사업 심의의 건(낙동종합사회복지관-부산시 강서구 장애인도시락 배달사업)」을 보고하다.

■ 산하시설 신규위탁사업 심의사유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도시락 배달사업 위탁 공고
- 2023. 03. 06.(월)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도시락 배달사업 위탁 신청
- 신규위탁사업 이사회 승인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재단 내 이사회 일정으로 인해 부산 강서구 지자체 협의를 통해 차기 이사회 진행시 위탁 관련 이사회 서류 제출로 협의.
- 2023. 03. 23.(목)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도시락 배달사업 기관 선정
- 제164회 이사회 안건 상정 심의 진행

■ 사업 개요

- 사업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도시락 배달사업
- 이용대상 : 만 60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장애인
- 예산 : 연 93,600천원 (시군구 보조금)
- 위탁범위 : 장애인도시락배달사업 관리 및 운영 등 전반
- 위탁분야 : 장애인도시락배달 운영, 저소득 중증독거 장애인 안부 확인
- 위탁기간 : 2023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3년)

2. 본 회의 세 번째 안건인 「산하시설 신규위탁사업 심의의 건(낙동종합사회복지관-부산시 강서구 장애인도시락 배달사업)」에 대해 이사진 전원 찬성을 포함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다.

부의안건 4) 산하시설 운영규정 개정 심의의 건(지사어린이집)

1. 과장(김대해)은 「산하시설 운영규정 개정 심의의 건(지사어린이집)」을 보고하다.

[지사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 심의의 건]

▪ 개정사유

: 시설장 근로자유무 적용에 따른 2023학년도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대한 세부규정을 보완하여 변경·개정하고자 함.

▪ 개정내용

: 지사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안 비교표 참조

▪ 개정안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p>제3조 (운영) 본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서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으로 위탁하여 운영한다.</p>	<p>제3조 (운영) 본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이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며 <u>「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안내」을 기준하여 운영에 대한 업무를 위임하는 시설장(이하 ‘원장’)을 두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u> (추가)</p>
<p>제9조 (직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배치 및 주요 직무와 책임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보육사업안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기준한 보육사업관련 매뉴얼에 따르며 이외의 직무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시 수립되는 교사 역할 분담표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어린이집 상황 및 원장의 지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p>	<p>제9조 (직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배치 및 주요 직무와 책임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보육사업안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기준한 보육사업관련 매뉴얼에 따르며 이외의 직무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시 수립되는 교사 역할 분담표에 따라 수행한다. <u>다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u> (변경)</p>
<p>제10조 (채용) 4. 전염성 질환 및 인격결함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영유아보육 및 주요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는 종사자로 채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은 채용 전형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적법한 방법으로 응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제10조 (채용) 4. 전염성 질환 및 인격결함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영유아보육 및 주요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는 종사자로 채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하여 <u>원장은 (삭제) 채용 전형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적법한 방법으로</u> 응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제11조 (근로계약) 1.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자에게 사본 1부를 배부한다.</p>	<p>제11조 (근로계약) 1. <u>채용이 확정된 자는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의 대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u>(변경) 종사자에게 사본 1부를 배부한다</p>

<p>제12조 (임면)</p> <p>1. 보육교직원 및 그밖의 종사자는 「영유아보육법」 제 9조에 따라 어린이집 대표자가 임면하며 원장이 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하여 지체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한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 및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p>	<p>제12조 (임면)</p> <p>1. 보육교직원 및 그밖의 종사자는 「영유아보육법」 제 9조에 따라 <u>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의 대표자가 임면하며 원장이 그 역할을 대행 할 수 있다.(변경)</u>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하여 지체없이 <u>법인 및(추가)</u>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한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 및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p>
<p>제13조 (면직)</p> <p>2. 어린이집은 종사가 면직시 지체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직서를 첨부하여 보고한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 및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p>	<p>제13조 (면직)</p> <p>2. 어린이집은 <u>종사자의(변경)</u> 면직시 지체없이 <u>법인 및(추가)</u>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직서를 첨부하여 보고한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 및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p>
<p>제16조 (복무시간 및 휴일)</p> <p>4. 조퇴·외출</p> <p>① 종사자는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로 지정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상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절차에 의하여 사전에 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7. 결근</p> <p>① 업무외 상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예정일수를 기재한 결근계를 작성하여 1일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전 승인없이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 유선으로 보고하고 사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6조 (복무시간 및 휴일)</p> <p>4. 조퇴·외출</p> <p>① 종사자는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로 지정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상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소정절차에 의하여 사전에 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보고하여 업무상 차질이 없게 한다.(변경)</u></p> <p>7. 결근</p> <p>① 업무외 상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예정일수를 기재한 <u>연가신청서를(변경)</u> 작성하여 1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전 <u>보고(변경)</u>없이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 유선으로 보고하여 <u>업무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연차대체 합의서에 근거하여 우선 연차사용처리한다.(변경)</u></p>
<p>제17조 (휴일 및 휴가)</p> <p>4. 연차유급휴가</p> <p>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일전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을 촉진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p>	<p>제17조 (휴일 및 휴가)</p> <p>4. 연차유급휴가</p> <p>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일전에 원장에게 <u>보고하여야 하며.(변경)</u>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을 촉진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p>
<p>제33조 (연수교육)</p> <p>1. 원장은 보육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희망하는 기간에 년 1회 5일이내에서 연수기회를 줄 수 있다.</p>	<p>제33조 (연수교육)</p> <p>1. <u>원장은(삭제)</u> 보육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희망하는 기간에 년 1회 5일이내에서 연수기회를 줄 수 있다.</p>

<p>제34조 (출장)</p> <p>1. 출장은 어린이집의 업무 수행 상 필요에 따라 시행하며 종사자가 출장을 할 때는 어린이집으로 부터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p> <p>2. 출장 중에는 거처를 명확히 하면서 지시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용무를 처리하되 출장 용무가 변경되거나 예정시간 내 귀착치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그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어린이집에 보고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34조 (출장)</p> <p>1. <u>어린이집 종사자는 어린이집의 업무 수행 상 필요에 따라 출장을 수행할 수 있다.(변경)</u></p> <p>2. 출장 중에는 거처를 명확히 하면서 지시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용무를 처리하되 출장 용무가 변경되거나 예정시간 내 귀착치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그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어린이집에 보고하여 <u>업무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변경)</u></p>
<p>제42조 (예산)</p> <p>3.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은 예산서 및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p>제42조 (예산)</p> <p>3. <u>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은(삭제)</u> 예산서 및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p>제43조 (결산)</p> <p>1.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은 어린이집 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운영 위원회에 보고 및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매년 5월 31일까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p>제43조 (결산)</p> <p>1. <u>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은(삭제)</u> 어린이집 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운영 위원회에 보고 및 <u>법인(추가)</u>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매년 5월 31일까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p>제53조 (물품관리(자산 · 비품) 및 불용품처리)</p> <p>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규칙」,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을 관리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에 따라 운영한다.</p>	<p>제53조 (물품관리(자산 · 비품) 및 불용품처리)</p> <p><u>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은(삭제)</u>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규칙」,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을 관리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에 따라 운영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시행) 이 규정은 제,개정은 2023년 1월 27일 기준이며 시행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및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이사회를 통과한 즉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시행) <u>이 규정의 제,개정은 2023년 3월 23일(변경)</u> 기준이며 시행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및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이사회를 통과한 즉시부터 시행한다.</p>

[지사어린이집 취업규칙 개정 심의의 건]

▪ 개정사유

: 시설장 근로자유무 적용에 따른 2023학년도 어린이집 취업규칙에 대한 세부규정을 보완하여 변경·개정하고자 함.

▪ 개정 내용

: 지사어린이집 취업규칙 개정안 비교표 참조

▪ 개정안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p>제 3 조 (보육시설교직원의 정의)</p> <p>1. 원장 : 원장자격을 갖춘자이며, 원장으로 전적으로 어린이집 업무를 총괄 처리하는 자</p>	<p>제 3 조 (보육시설교직원의 정의)</p> <p>1. 원장 :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안내」을 기준하여 원장자격을 갖춘 자이며, (변경)「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의 위임을받아 어린이집 업무를 총괄 대행하는 자(추가)</p>
<p>제 8 조 (근로계약)</p> <p>1. 교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제 8 조 (근로계약)</p> <p>1. 교직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자는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의 대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변경) 종사자에게 사본 1부를 배부한다.(추가)</p>
<p>제 11 조 (복무의무)</p> <p>3. 교직원은 어린이집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원장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p>	<p>제 11 조 (복무의무)</p> <p>3. 교직원은 어린이집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보육사업안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기준한 보육사업관련 매뉴얼에 따라 주요 직무를 수행하며, 이외의 직무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시 수립되는 교사 역할 분담표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추가 및 변경)</p>
<p>제 17 조 (비상 출근명령)</p> <p>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중이라도 어린이집의 비상 출근명령을 받은 자는 출근하여 원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 17 조 (비상 출근명령)</p> <p>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중이라도 <u>어린이집의 비상시 역할 분담표에 따라</u>(변경) 업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 28 조 (출근, 결근)</p> <p>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이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p>	<p>제 28 조 (출근, 결근)</p> <p>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그 사유와 예정일수를 기재한 연가신청서를 작성하여 1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전 보고 없이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 우선으로 보고하여 업무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연차대체합의서에 근거하여 우선 연차사용처리한다.</u>(추가 및 변경)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p>

<p>제 29 조 (지각, 조퇴, 외출)</p> <p>2. 교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 29 조 (지각, 조퇴, 외출)</p> <p>2. 교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절차에 의하여 사전에 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보고하여 업무상 차질이 없게 한다. (변경)</p>
<p>제 34 조 (연차휴가의 사용)</p> <p>1. 교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일 전에 원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 34 조 (연차휴가의 사용)</p> <p>1. 교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일전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예정일수를 기재한 연가신청서를 작성하여 1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p>
<p>제 41 조 (임신부의 보호)</p> <p>1. 임신 중의 여성 교직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p> <p>2. 임신 중인 여성 교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교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 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교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어린이집은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p> <p>6. 임신 중의 여성 교직원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부득이 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근로를 재택근무로 할 수 있다.</p>	<p>제 41 조 (임신부의 보호)</p> <p>1. 임신 중의 여성 교직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를(변경)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에는(변경) 60일 이상) 부여한다.</p> <p>2. 임신 중인 여성 교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일 경우에는(변경)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교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 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교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어린이집은 최초 60일분(다태아일 경우에는(변경)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90일간 (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추가)</p> <p>6. 임신 중의 여성 교직원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부득이 한 경우 교직원과 협의하여(변경) 연장근로를 재택근무로 할 수 있다.</p>
<p>제 43조 (육아 휴직)</p> <p>1. 어린이집은 임신 중인 여성 교직원이 모성을 보호 하거나 교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43조 (육아 휴직)</p> <p>1. 어린이집은 임신 중인 여성 교직원이 모성을 보호 하거나 교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 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해당한다.(변경 및추가)</p>

<p>제 43조의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p> <p>1. 어린이집은 교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43조의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p> <p>1. 어린이집은 교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해당한다.(변경 및 추가)</p>
<p>제 45조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p> <p>1. 어린이집은 교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45조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p> <p>1. 어린이집은 교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①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p> <p>②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교직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p> <p>③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교직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교직원이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p> <p>④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p> <p>⑤ 교직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변경 및 추가)</p>
<p>제 58 조 (퇴직급여의 수준 등)</p> <p>1. 어린이집은 1년 이상 근무한 교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p>	<p>제 58 조 (퇴직급여의 수준 등)</p> <p>1. 어린이집은 1년 이상 근무한 교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거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변경)</p>
<p>제 68조의 2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p> <p>1.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p>	<p>제 68조의 2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p> <p>1.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대표자(변경)에게 신고할 수 있다.</p>
<p>제 81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p> <p>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어린이집에 신고할 수 있다.</p>	<p>제 81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p> <p>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대표자(변경)에게 신고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 5 조 (시행일) 본 규칙은 2022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 5 조 (시행일) 본 규칙은 2023년 3월 23일(변경)부터 시행한다.</p>

2. 본 회의 네 번째 안건인 「산하시설 운영규정 개정 심의의 건(지사어린이집)」에 대해 이사진 과반수 이상 반대를 포함에 따라 부결하다.

참석인원 전원 합장으로 회의를 마무리하며 법인사무처에서는 본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회향참회를 올리고, 임원 전원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하고 이사회를 마친다.

2023년 05월 09일

대표이사	김 영 식	이 사	정 일 호
이 사	김 성 학	이 사	김 산
이 사	황 태 원	이 사	정 태 근
이 사	조 기 룡	이 사	박 형 준

전각복지재단의 감사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1항에 근거 본 회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합니다.

감 사 구 동 현

감 사 최 재 혁